

SUPPLIER CODE OF CONDUCT POLICY - 협력업체 행동 강령

2025년 6월

PLS-POL-CP-001-KO

1 목적 및 범위

필바라 미네랄스 리미티드(Pilbara Minerals Limited, 이하 '**PLS**') 및 그 자회사들(이하 '**그룹**')은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그룹의 사업을 책임 있고 윤리적이며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일환으로 당사는 모든 공급업체, 계약업체,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윤리, 청렴성, 그리고 환경, 보건, 안전, 지역사회 관리에 있어 높은 기준을 유지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행동 강령(이하 '**강령**')은 어떤 방식으로든 PLS에 상품, 용역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공급업체, 계약업체 및 용역업체(이하 통칭 '**공급업체**')에 적용됩니다. 당사는 공급업체가 본 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들과 협력하는 하위 공급업체들 또한 유사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것을 기대합니다.

2 공급업체 요건

2.1 법률 준수

공급업체는 현지 및 국내를 포함한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노동, 환경 보호, 안전, 인권,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된 법령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법률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업무 절차, 내부 정책 및 운영 방식에 신속히 반영해야 합니다.

2.2 경영 윤리 및 투명성

공급업체는 청렴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모든 거래가 공정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모든 적용 가능한 제재 조치, 무역 규제 및 수출 통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정확한 사업 기록을 유지하고, 재무 및 운영 활동을 적절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 관련 부패 방지 및 뇌물 수수 방지 법률에 따라 부패·뇌물 수수·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뇌물 수수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모든 금융 거래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반경쟁적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 PLS와 관련된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 상충을 공개하고 적절히 관리하며, 부적절한 정치 활동 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 공급하는 상품 및/또는 용역의 품질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사용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공된 설명과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 PLS가 제공한 모든 민감 정보를 대외비로 유지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세금 납부, 이전가격 과세 관련 의무를 포함해, 적용되는 모든 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조세 회피 계획 또는 PLS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습니다.
- PLS의 독점 정보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적절한 승인 없이 PLS의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2.3 인권 보호 및 노동 기준 준수

공급업체는 인권 보호를 존중해야 하며, 인권 침해 및 현대판 노예 제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아동 노동:** 법적 최저 고용 연령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8호를 포함한 국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강제 노동:** 전 사업장에 걸쳐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이나 의무 노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고용을 선택하고 퇴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 **인신 매매:** 인신매매, 강제 노동, 혹은 착취를 조장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사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며,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 **임금, 가산수당 및 근로 시간:** 공급업체는 근로자에게 관련 최저임금법에 따라 공정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근로시간, 초과근무, 가산수당과 관련된 현지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징계 또는 기타 위법한 사유로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 **보안:** 공공 또는 민간 보안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그 보안 인력이 법을 준수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본권과 인권을 존중하며, '보안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사업장 및/또는 공급망 내에서, 현대판 노예제를 포함한,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를 인지한 경우, 그리고 분쟁 지역 또는 고위험 지역에서 원자재나 기타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이를 PLS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2.4 보건, 안전, 환경 및 지역사회

- **보건 및 안전:** 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보건 및 안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행동 기반 안전 및 웰빙 문화를 적극 장려하고, 사고, 부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며, 리스크 관리 및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환경 관리:** 환경법을 준수하고,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촉진하며, 배출물, 폐기물 및 수자원 사용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원주민들과의 협력:** 공급업체는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지역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하며, 의미 있고 개방적이며 정직하고 상호 존중하는 방식으로 원주민 (First Nations)들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야 하며, 이는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 동의 (FPIC)'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적절한 경우, 원주민(First Nations)을 위한 고용, 교육 및 사업 개발 기회를 마련하도록 권장됩니다.
- **지역사회 참여:** 공급업체는 사업 운영이 지역사회, 특히 원주민 공동체에 미치는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지역 기업 활동과 지역 조달도 지원해야 합니다.

2.5 포용과 웰빙

공급업체는 다양성, 포용성,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운영 과정에서 차별, 괴롭힘 또는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구됩니다:

- 공급업체는 직장 내 괴롭힘, 희롱 또는 차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성적, 언어적, 인종적, 신체적, 시각적 괴롭힘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괴롭힘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 모든 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존엄성을 지키며, 자신의 권리 침해나 부당 행위를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느끼는 근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 괴롭힘, 희롱 및 차별을 예방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시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괴롭힘, 희롱 및 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적시에 적절히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 및 대리인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 채용, 승진 및 처우에 있어 모든 직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2.6 사이버 보안,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 모든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무단 접근, 오용, 손실 또는 도난으로부터 대외비 정보,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데이터 보안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PLS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모든 데이터의 무결성과 대외비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암호화, 보안 저장소 및 접근 통제 등의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 관련 법규에 따라 모든 데이터 유출 또는 사이버 보안 사고를 신고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2.7 공급망 투명성 및 실사 의무

- 투명성, 추적 가능성,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견고한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위 공급업체와 계약업체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며, 제재 대상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심사와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원자재의 책임 있는 조달을 보장하고 ‘OECD 책임 있는 공급망을 위한 실사 지침’ 등과 같은 국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자사 제품에 분쟁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해당 광물이 고위험 지역에서 조달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3 소셜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공급업체는, PLS의 사전 승인 없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 어떠한 매체에서도 PLS의 브랜드나 로고를 인용하거나, 사용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니터링 및 준수

- PLS는 본 강령에 대한 공급업체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본 강령의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PLS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정보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급업체가 본 강령의 일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불이행 또는 중대한 위반의 경우, PLS는 해당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해지할 권한을 가집니다.
- 본 강령을 위반했거나 그룹 업무와 관련된 법률/규제를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이를 즉시 PLS에 보고해야 합니다.

5 고충 제기

PLS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강령의 잠재적 위반과 관련된 문제와 우려를 파악하고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윤리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접수된 모든 신고는 대외비로 처리됩니다.

공급업체는 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자체 고충 처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여기에는 대외비, 보복 금지 및 공정한 조사를 위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서약 및 확인

PLS는 모든 공급업체가 본 강령의 요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공급업체는 PLS와 사업 관계를 체결함으로써, 본 강령에 명시된 조항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함을 인정합니다.

본 강령은 변화하는 국제 표준 및 규제에 부합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개정됩니다.

정책 기록

본 정책은 경영진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필요에 따라 개정됩니다.

정책 수립일:	2025년 6월 20일
최종 검토일:	해당 없음
빈도	1년